

민사항소부 등 재판부 증설·폐지에 따른 행정예고

민사항소부 등 재판부를 증설·폐지함에 있어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6일
인천지방법원장

1. 행정예고의 이유

- 2024. 2. 19.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민사항소부 등 재판부를 증설·폐지하고자 함

2. 행정예고안(재판부 증설·폐지안)

- 민사항소 재판부 기존 5개에서 6개로 1개 증설
- 민사단독 재판부 기존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

3. 진행절차

- 공고기간 : 2024. 2. 16.
- 시행일
 - 2024. 2. 19. 제7민사부, 민사제29단독 신설

4. 의견제출

- 「민사항소부 등 재판부 증설·폐지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. 2. 16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제출 할 곳
 - [우편번호 22220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, 인천지방법원
 - 수신자 : 인천지방법원장, 참조 : 총무과
 - 전화 : 032-860-1169, FAX : 032-860-1467
 - E-mail : misia7@scourt.go.kr